대한민국정부



제18021호 2013. 5. 22.(수)

【법 률】

○법률제11764호(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5
○법률제11765호(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 ······11
○법률제11766호(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16
○법률제11767호(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 ····································
○법률제11768호(시국사건관련교원임용제외자채용에관한특별법 폐지법률)20
○법률제11769호(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 ······21
○법률제11770호(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 ······21
○법률제11771호(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 ····································
○법률제11772호(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개정법률) ······23
○법률제11773호(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개정법률) ·······24
○법률제11774호(여권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1775호(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25
○법률제11776호(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26
○법률제11777호(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개정법률) ····································
○법률제11778호(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28
○법률제11779호(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법률) 29
○법률제11780호(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30
○법률제11781호(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31
○법률제11782호(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31
○법률제11783호(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32
○법률제11784호(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33
○법률제11785호(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34
○법률제11786호(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37
○법률제11787호(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39
○법률제11788호(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법률제11789호(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48

(이면 계속)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의 적용대상을 이 법 시행 전에 부도 등이 발생한 공공건설임대주택에 한하여 이를 매입하여 보금자리주택 등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부도 등이 발생한 날 전에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체결한 계약서에 한해서 임대보증금이 보전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임차인이 부도 등이 발생한 후에 체결한 최초의임대차계약서로서 확정일자 등 임대주택을 점유한 날을 증명할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을 보전할수 있도록 하며, 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등 영세한 법인의 임차주택도 임대보증금 보전대상에 포함하고, 부도 등이 발생한 임대주택을 매입하여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급한 경우 이의 분양전환 시 의무임대기간 기산일을 당초 임대개시일로 하여 분양전환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문제를 해소하는 등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박 근 혜 인

2013년 5월 22일

국무총리 정 홍 원

국 무 위 원 국토교통부 서 승 환 장 관

◉ 법률 제11803호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

지하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으로 한다.

제5조의2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지하수정보체계를 구축하려면 미리 국토교통부장관 및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의2제5항(종전의 제4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시장"을 "시장(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한다.

보

제9조의2제1항 중 "지하수가"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지하수가"로, "수립·시행하여야"를 "수립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그 대책을 시행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규모"를 "기준"으로 한다.

제9조의5제1항 중 "개발·이용하는 자는"을 "개발·이용하는 자(이하 "지하수개발·이용자"라 한다)는"으로 한다.

제2장에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1조(권리·의무의 승계 등) ① 지하수개발·이용자가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양도하거나 사망한경우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 허가·변경허가·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자의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인수한 자는 허가·변경허가·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권리·의무를 승계한 경우에는 승계일부터 1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제3항 중 "광역시"를 "광역시·특별자치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알려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를 "시장(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군수·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을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지정 변경 사실 및 그 내용을 일반인이 열 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역의 안정적인 지하수자원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지하수를 보전·관리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12조의2제2항 중 "광역시"를 "광역시 · 특별자치시"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제7조·제9조 및 제10조"를 "제7조, 제9조, 제9조의2부터 제9조의7까지, 제10조 및 제11조"로 한다.

보

제17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이 보조관측망을 설치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제6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이 지하수의 이용실태를 조사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보고받은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제1항 중 "대통령령으로"를 "양도일·양수일 또는 합병일부터 1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대통령령으로"를 "승계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30조의2제1항 중 "시"를 "시(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특별회계 운용계획을 수립하거나 수립한 특별회계 운용계획을 변경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만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의3제2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를 "지하수 취수량, 용도 등을 고려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57조 및 제59조를 준용한다.

제30조의3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납부 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지하수이용부담금을"을 "지하수이용부담금이나 제4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로 한다.

제39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지하수 유출감소대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제40조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11조제3항에 따른 승계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하수 유출감소대책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지하수 유출감소대책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3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지하수이용부담 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지하수를 효율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하수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수 있도록 하고, 지하시설물 등 설치자에게 유출지하수의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신고하도록 하며, 지하수이용부담금 납부를 지연하는 경우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지하수정보체계 구축・운영 등(안 제5조의2)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게 지하수를 관리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뿐만 아니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도 지하수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지하수정보체계를 구축하려면 미리 국토교통부장관 및 환경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며,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하수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지하수조사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할 수 있도록 함.

나. 유출지하수 감소대책 신고 의무화(안 제9조의2제1항)

유출지하수의 효율적 이용과 지반 침하 등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지하철 등의 지하시설물이나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을 설치하려는 자는 일정 기준 이상으로 지 하수가 유출되는 경우 수립된 유출지하수 감소대책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다. 지하수 개발ㆍ이용 관련 권리ㆍ의무의 승계 명확화(안 제11조 신설)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허가·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가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으로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 허가나 신고 등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함.

라. 국가의 지하수 보전·관리 대책의 수립·시행 근거 마련(안 제12조제9항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은 지하수보전구역의 안정적인 지하수자원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미리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그 지역의 지하수를 보전·관리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함.

마. 지하수이용부담금에 대한 가산금 부과(안 제30조의3제4항 신설)

부담금 간 납부의 형평성을 위하여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내야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지하수이용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납부기한이 지난 날 부터 체납된 지하수이용부담금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